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-3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(안 제5조 및 제7조)

-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: 정액분 100% 인상
-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: 각 종별 50% 일괄 인상

나.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0조 및 제12조)

- “법 제13조제3항”을 “법 제13조제5항”으로 변경
-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산출세액 “5만원”에서 “10만원”으로 반영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4. 2. 20. ~ 3. 12.(제출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세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”로,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세율)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세율
제1종	67,500원
제2종	54,000원
제3종	40,500원
제4종	27,500원
제5종	18,000원

제10조제2호가목 중 “법 제13조제3항”을 “법 제13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지방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“법 제13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13조제5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“법 제13조제3항제5호”를 “법 제13조제5항제5호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5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지방세법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----- -----.
제3조(부과 · 징수사무의 위임) 구세의 부과 ·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	제3조(부과 · 징수사무의 위임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-----.
제5조(세율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유권의 보존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(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.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. 지상권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. 저당권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	제5조(세율)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.

다. 지역권: 요역지(要役地)

가액의 1천분의 2

라. 전세권: 전세금액의 1천분

의 2

마. 임차권: 월 임대차금액의

1천분의 2

3. 경매신청·가압류·가처분
및 가등기

가. 경매신청·가압류·가처

분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
나. 가등기: 부동산 가액의 1

천분의 2

4. 그 밖의 등기: 건당 3천원

제6조(신고 및 납부) 등록면허세
의 과세물건을 등기·등록하려
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
·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
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
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
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
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
납부하여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제7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
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

제6조(신고 및 납부)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
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

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
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
구분	세율
제1종	45,000원
제2종	36,000원
제3종	27,000원
제4종	18,000원
제5종	12,000원

제10조(세율) 법 제111조제1항에
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
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 략)
2. 건축물

가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
골프장(같은 항 각 호 외의
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
니한다), 고급오락장용 건
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
40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
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
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
하는 지역의 「지방세법
시행령」 제110조에 따른
공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
의 1천분의 5

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
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세율
제1종	67,500원
제2종	54,000원
제3종	40,500원
제4종	27,000원
제5종	18,000원

제10조(세율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가. -- 제13조제5항-----

나. -----

----- 「지방세법 시행
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다. (생략)

3. 주택

가.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
따른 별장: 과세표준의 1천
분의 40

나. (생략)

4. 선박

가.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
따른 고급선박: 과세표준
의 1천분의 50

나. (생략)

5. (생략)

제12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
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
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
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
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
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다. (현행과 같음)

3. ----

가. -- 제13조제5항제1호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4. ----

가. -- 제13조제5항제5호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납기) -----

----- 10만원 -----

-----.